

대전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가단1033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남로

담당변호사 김영호, 김희숙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석

변론 종결 2020. 12. 3.

판결 선고 2021. 1. 21.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12,728,71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61,600,000원, 원고 B에게 112,728,71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23.

체결된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8. 7. 20. D에게 5,000만 원, 2018. 11. 20. 3,000만 원, 2018. 11.21. 5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D로부터 2018. 8. 20.부터 2019. 5. 24.까지 사이에 합계 2,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 B은 2018. 10. 23. 1억 원, 2018. 10. 29. 7,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27. D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9. 2.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D로부터 "피고에게 2018. 12. 27. 1억 7,500만 원을 D가 2019. 2.21. 상환하기로 약속함"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라. D가 2019. 2. 21.까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9. 4. 23.D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D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의 신청으로 2019. 6.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사건 아파트가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위 경매법원은 2020. 3. 5.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게 112,728,71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2020. 3. 19. 위배당액 전액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제3호증의 2,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원고 A이 D에게 합계 8,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2,34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 B이 D에게 1억 7,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D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D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D를 통하여 F에게 투자한 것이어서 원고들이 D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앞서 본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들이 D에게 각 송금한 금원 상당액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은 D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들과 D 사이에 금원 대여와 관련하여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D는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는, 원고들이 D에게 송금한 금원이 당일 F 측으로 이체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D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F에게 금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D에게, 자신이 상품권을 싸게 산 후 비싸게 되팔아 큰 수익을 얻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2018. 3. 22.부터 2019. 3. 27.까지 221회에 걸쳐 41억 4,4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대전지방법원 2019고합217)되어 2020. 5. 29. 위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원고들이 D에게 송금한 후 D가 다시 F측에 송금한 금원은 모두 D의 F에 대한 피해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D는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F에게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F에게 바로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한편 피고는, D는 오랫동안 친분관계가 있는 원고들과 모의하여 원고들이 D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다는 외관을 작출한 다음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송금 내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물론 피고가 D에 대하여 금원을 대여하기도 이전에 발생한 것인바, 위와 같은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이전에 D에 대하여, 원고 A은 6,160만 원(=8,500만 원 - 2,340만 원), 원고 B은 1억 7,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 각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F으로부터 2018. 3.경부터 2019. 4.경까지 합계 41억4,450만 원을 편취당한 상태였는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D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재산 외에 원고들 및 피고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편취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바, D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인 2019. 4. 23.경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D 스스로도 자신이 보유한 재산으로 원고들 및 피고 등에 대한 채무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D는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일반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하여

-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D와 특별한 친분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에 압류나 가압류 등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가 D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었음을 들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 2)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 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 3) 위에서 본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D가 변제기한인 2019. 2. 21.까지피고에 대한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그 주장 자체로 보아도 피고가 D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앞서 본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D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던 2019. 4. 23. 원고 A으로부터 문자를 받아 적어도 원고 A이 D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4)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고,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참조).

한편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최소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최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제3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매각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며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112,728,711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채권자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 A은 D에 대하여 6,160만원, 원고 B은 D에 대하여 1억 7,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들의 위 채권액과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인 112,728,711원 중 적은 금액인 112,728,711원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 A에게는 6,160만원, 원고 B에게는 112,728,7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호성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아파트 I동

[도로명 주소] 대전 유성구 J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대전 유성구 G 대 61088평방미터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K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103.3658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61088분의 60.6582

-끝-